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2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신복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소영철, 신동원, 왕정순,
윤기섭,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원형,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34명)

1.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함(안 제 7조)
- 나.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7호 신설)
- 다.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를 “설치하여”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u>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u>,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u>운용하여</u>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u>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u><신 설></u></p>	<p>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 --- <u>설치하여</u> ----- ----- <u>운용하되</u>, <u>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u> <u>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u></p> <p>8. ----- ----- <u>위원</u> <u>회</u>-----</p> <p>③ <u>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u></p>

<신 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
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
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 운용시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